

「농촌경제」 운영지침

제 정 2016. 11. 8 개 정 2017. 4. 27

개 정 2023. 12. 26 개 정 2025. 7. 24

개 정 2025. 11. 26

제6장 연구윤리

제31조(목적) 본 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농촌경제」의 발간과 관련하여 논문 게재를 원하는 자, 편집위원, 심사위원 및 윤리위원이 준수하여야 할 연구윤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2조(적용 대상) 이 장은 「농촌경제」에 논문의 게재를 원하는 자(이하 “투고자”라 한다), 편집위원, 심사위원 및 윤리위원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33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및 적용 범위) ①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심사하거나 연구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및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행위, 중복게재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의견의 차이 등은 제외한다.

- 1.“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표절”이라 함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5.“중복게재” 또는 “자기표절”은 자신이 과거 창작한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로 창작하는 저작물에 다시 이용하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또는 출처를 밝혔다고 해도 통념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분량을 넘어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6.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지나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제34조(연구윤리기준) ①투고자가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고자는 제33조에서 제시된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2. (인용 및 참고 표시) 투고자는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농촌경제」의 투고요령에 따라 그 사실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그 외의 학술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3. (논문의 수정)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논문의 수정과정을 진행하고, 심사의견에 대한 반영 내용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의견과 심사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편집위원회가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편집위원의 기본업무)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2. (차별금지) 편집위원회는 「농촌경제」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투고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 및 심사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공정한 심사의뢰

가.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나. 편집위원회가 투고된 논문을 심사의뢰 시 투고자를 알 수 있는 사항을 제외한 논문의 내용만을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비밀준수) 편집위원은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를 받거나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나,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성실한 심사

가.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심사위원은 전공불일치 또는 다른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심사 대상 논문의 내용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 지체 없이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공정한 심사

가.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된 논문에 대하여 제25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나.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된 논문에 대하여 게재불가 판정을 한 경우에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3. 투고자에 대한 존중

가.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나. 심사위원은 심사의견서를 작성함에 있어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하여야 한다.

4. (비밀준수)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위해 반드시 조언이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의하여서는 안 되며, 투고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제34조의2(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윤리기준) ①논문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이하 'AI')이 사용될 경우, 그 사용 목적과 범위(데이터 처리·분석, 번역, 요약, 문장 개선 등)를 원고에 기재한다(신설 2025.11.26).

②AI 산출물을 원고에 활용하는 경우, 저자가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AI 활용에 대한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또한 AI 활용이 개인정보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신설 2025.11.26).

③AI는 저자·공저자·기여자로 기재하지 않는다(신설 2025.11.26).

제35조(연구윤리규정 위반 제기) ①「농촌경제」 발간과 관련하여 본 규정을 위반한 의혹이 있는 경우, 제보자에게 제한 없이 본지의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간사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②편집위원장은 의혹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며, 신원 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편집위원장 및 본지의 발행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의혹 제보자가 신분상 불이익이나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3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①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기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관련 전문가 5인 이상으로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③연구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연구윤리위원회의 책임과 권한) ①연구윤리위원회는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는 규정 준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②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에게 규정 위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의혹 당사자에게 그에 대한 진술 및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연구윤리위원회는 구성 후 60일 내에 조사와 심의를 종결하여야 한다.

④연구윤리위원회는 제3항의 종결 이후 조사·심의 결과를 10일 내에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제38조(투고자 등의 협조의무) 연구윤리기준의 위반으로 보고된 투고자 등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만일 투고자 등이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에, 그 자체로 연구윤리기준에 위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5.11.26).

제39조(소명 기회의 보장) 연구윤리위원회는 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0조(무혐의에 대한 사후조치) 조사·심의 결과 무혐의로 판정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의혹 당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사후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편집위원장에게 건의하여야 하며, 편집위원장은 이를 즉각 수용, 실행하여야 한다.

제41조(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유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을 비롯하여 규정 위반 여부의 조사·심의에 참여하는 사람은 조사의 대상이 된 의혹 내용이나 의혹 당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42조(제재조치) 연구윤리위원회에 의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다음 각 항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한다.

- ① 표절 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는 이후 일정 기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농촌경제」에 논문투고를 할 수 없다.
- ② 게재 이후 표절 판정을 받은 논문은 「농촌경제」 논문 목록에서 공식 삭제한다.
- ③ 윤리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편집위원장은 제1항과 2항의 사실을 규정 위반 당사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이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④ 편집위원장은 제3항의 업무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표절 판정 및 제재조치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 ⑤ 표절 이외의 규정 위반 판정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제재조치를 따른다.

[별지 제2-1호 서식] (개정 2025.11.26)

농촌경제 연구윤리서약서

1. 본인은 <농촌경제 연구윤리기준과 AI활용 윤리기준>을 숙지하였으며, 본인이 투고한 논문은 <농촌경제 연구윤리기준과 AI활용 윤리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본인은 <농촌경제 연구윤리기준과 AI활용 윤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됨을 인지하고 있으며, 윤리 규정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저자

(서명 또는 인)

농촌경제 편집위원장 귀하

농촌경제 저자 점검표

논문 투고 전에 반드시 아래 사항을 검토하고 □에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투고한 논문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일반사항

- 중복투고 논문이 아니며, <농촌경제 연구윤리기준과 시활용 윤리기준>을 준수함
- 연구비 및 이해관계의 명시에 대한 사항을 기재함
- 최종 논문의 표절검사(논문 유사도 검사)를 진행했으며, 연구윤리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함
- 투고 이후에 저자 추가, 저자 순서 변경, 교신저자 변경 등 저자와 관련한 변경은 편집위원회 승인 후 진행가능을 확인함
- 투고논문 공동저자 중 특수관계인*이 참여하고 있는 경우, 관련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알릴 의무가 있음을 확인함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및 4촌 이내 혈족)

초록

- 국문과 영문 초록을 모두 작성함
- 초록의 분량 기준을 준수하였음(한글과 영문 함께 10줄 안팎으로 제출)
- 초록에 연구배경, 방법, 결과, 결론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논문 내용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음
- 저자사항 아래에는 4~5단어의 주요 용어(Keywords)를 작성하며, 국문과 영문을 함께 표기하고, 영문 키워드는 국영문 논문 모두 소문자로 표기함.

원고작성

- '농촌경제 스타일 밀판'에 따라 한글프로그램 혹은 MS Word를 사용하여 작성함
- 논문의 분량은 요약과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A4 20매 내외로 작성함

참고문헌

- 모든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하였음
- 참고문헌 표기방법과 구두점이 투고규정에 맞는지 확인함

대표
저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농촌경제 편집위원장 귀하